

瑞山市地方青少年委員會構成 및 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5. 18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5. 18
- 라. 上程日字 : 1999. 5. 25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社會女性福祉課長 崔鎮珏)

가. 提案理由

- 지난 '95.12.29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제외한
 -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 동위원회의 주요기능은
 -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함.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조례안은 제정배경, 주요내용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 서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형식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명인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명칭중
 - “서산시”와 “지방”이라는 명칭이 상호부합됨으로 “지방”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지난 '95.12.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조례안 제4조(위원의임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형편”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중
- “위원회 형편”에 의한다는 해촉규정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 별도 지침마련등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修正案의 要旨

가. 조례안의 제명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함.

나. 제1조(목적)중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함.

7. 審査結果 : 수정가결

※ 붙임 : 수정안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명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한다.
- 제1조(목적)중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u>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u></p> <p>제1조(목적)</p> <p>.....</p> <p>..... <u>서산시청소년위원회</u></p> <p>.....</p> <p>.....</p>

의안번호	제 64 호
의결년월일	1999. 5. 28. (제 29 회)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5. 18 .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 64 호
----------	--------

제출년월일 : 1999. 5. 8
제 출 자 : 서산시장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장 및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지시문서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표준안 관련건 통보(청소년 82501-300('96. 5. 27))
- 나.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9. 3. 25 ~ 4. 15
 - 예고결과 : 의견없음.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형편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